

# 감사원

## 주 의 요 구

제 목      홍보용역사업 예산 편성·집행 부적정

소 관 기관      병무청

조 치 기관      병무청

내 용

병무청은 병무행정 정책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‘병무행정안내’ 사업(2017년도 예산 15억 4,300만 원)을 추진하면서, ‘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 조성 정책홍보’와 ‘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’ 등 2개 홍보용역사업의 2017회계연도 예산 4억 1,000만 원을 일반수용비(210-01목)에 편성·집행하였다.

기획재정부는 「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2016년 4월)을 수립하면서 ‘용역제공에 대한 대가’(이하 “용역비”라 한다)는 일반수용비로 편성·집행하지 말고 관리용역비(210-15목)<sup>1)</sup> 또는 일반용역비(210-14목)<sup>2)</sup>로 편성·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 용도에 따라 세목을 세분화하였다.

그리고 해당 내용은 「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2017년 1월, 기획재정부)에도 반영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가 홍보용역사업 예산을 편성·집행할 때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·집행해서는 안 되고 일반용역비 등 용역비 지급이 가능한 예산 비목으로 편성·집행

---

1)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 유지보수 용역비

2) 나머지 일반 업무의 대행용역비

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는 ‘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 조성 정책홍보’와 ‘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’ 등 2개 홍보용역사업의 2017회계연도 예산 4억 1,0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·집행함으로써 개정된 「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 및 「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위반하였다.

**관계기관 의견**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용역 사업 예산을 지침에 맞게 편성·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병무청장은 앞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반수용비로 편성·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·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